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5 선고 2020나617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5 선고 2020나6170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 선고 2018가단5231850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별

담당변호사 이윤철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

피고보조참가인 C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

담당변호사 정병은

변론종결 2021. 5. 28.

판결선고 2021. 6. 25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. 선고 2018가단5231850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,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4. 26.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. 5. 29. 접수 제728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당심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추가하는 부분]

원고는, 채무자인 D과 피고는 원고 등 다른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실제 채무가 변제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피고 보조참가인 등의 D에 대한 채권의 우선순위를 서둘러 확보하고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 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담보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D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는바, 이러한 사정은 D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등 가압류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에 이른 것을 의미하므로,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취지로

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D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“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공사비의 대부분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출받았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담보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여 우선수익자 1순위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.”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~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~⑤ 기재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,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①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에 관하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전체 과정 및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인 2015. 11. 12.경 이미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이 예정되어 있었다.

② D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신축 자금의 대부분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는바, 그러한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 보조참가인을 우선수익자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③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분양을 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일반채권자에 대한 D의 실질적인 변제력도 증가할 여지가 있다.

④ 원고가 2016. 10.경 가압류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, 원고 역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예정되어 있고 대출을 실행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⑤ D에 대한 사기 등 형사사건은 D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,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와는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정민, 판사 윤웅기, 판사 신재환

별지